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12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정보통신산업과 양병내 과장(2110-4810), 송정훈 사무관(2110-4814)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매시 제안요청서 발주규격 심의제도 도입

-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정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제안요청서 발주규격심의 의무화, 평가위원 추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금년 12.24(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동 지침 제정은 지난 8.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후속조치** 중 일환임

○ 현재 제안요청서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만연 등 **장비구매 全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만연中**

* '06~'08년 공공기관의 장비구매 제안요청서(RFP) 211건 분석결과, 특정회사명 언급 등 약 20%내외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 포함

< 네트워크장비시장 현황 >

◈ 세계 네트워크장비 시장 규모는 1,512억불('09년) 규모로, 기술·특허 장벽,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Cisco, Huawei 등 소수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

○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국산화율이 10% 수준**으로 저조

⇒ 국산업체에 **동등한 기회 제공, 기술력 향상** 유도 및 **적정이윤 보장**으로 **中企육성과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 지침을 제정키로 함

□ 동 지침은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을 **추천**하기로 함

○ 또한, **사업자 평가·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경부가 제안서 평가위원 풀 추천**을 **가능**하게 함

○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중시**되어야 하는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고, 저기입찰 방지 및 中企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9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상 기술 80, 가격 20이 원칙

○ 유지보수 비용의 차별적 지불 방지 및 유지보수에 비용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하여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국산·외산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함

<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현황 >

구분 \ 대상	통신사업자	일반기업체	공공기관
국산 제품	도입단가의 1~2%	도입단가의 4~5%	도입단가의 6~7%
외산 제품	도입단가의 10~20%		

○ 장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침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그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기로 함

<참고>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참고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226호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안)

2010년 12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2. "IT 네트워크장비"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사업과 3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사업계획서 기술기준)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아키텍쳐, 기술, 표준, 상호운용성, 확장성,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제안요청서 초안 사전공개) ① 발주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IT 네트워크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①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별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IT 네트워크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상임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인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이들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직후 1년간은 상임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선임이 가능하다.

④ 비상임위원은 7인 이내로 하되, 발주기관이 최대 3인을 선임하며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선임한다.

⑤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추천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요청서 심의·확정) ①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② 발주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발주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를 확정하자는 발주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제안요청서 공고) 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요청서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최소한 10일 이상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는 인터넷 게시, 신문광고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공고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①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별로 사업자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자 평가) ①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자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90점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제11조(유지보수) 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IT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산·외산 장비간 차별없이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차별적 비용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의 IT 네트워크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은 실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